

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2. 27

행정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 및 제출자 : 2019. 2. 8.(금), 이원국 의원 등 18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8.(월) (의안번호 제84호)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19. 2. 25.(월),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원국 의원

나. 제안이유

강동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1) 상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
- 2) 구기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3) 상징물의 관리,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6조)
- 4)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~9조)

라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 국기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상표법」, 「지방세법」
- (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(3) 합 의 : 홍보과(홍보팀)와 협의
- (4) 입법예고(2019. 2. 9. ~ 2. 13.) : 의견 없음

3. 검토의견

①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

- 본 제정 조례안은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치구의 정체성과 대외적 위상제고, 구민의 일체감 조성 및 애郷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원국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되었음
-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상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, 구기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, 상징물의 관리,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6조),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9조) 등을 정하고 있음.

② 상징물의 종류

- 본 조례안에서는 휘장, 브랜드, 캐릭터, 구의 꽃, 구의 나무, 구의 새를 상징물로 정하고 있음.
 - 다만, 꽃(매화), 새(종달새), 나무(잣나무) 등 자연물 상징물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이들이 구의 상징물로 정하여진 기원이나 유래, 연혁, 의미 등에 대한 고증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음.
 - 따라서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인지도 향상과 마케팅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기호나 도형체계 상징물과 달리 자연물 상징물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증자료의 보완과 정리가 필요할 것임.

③ 상징물의 관리 운영 및 사용

- 상징물 관리 및 관련사업 시행 근거 규정을 둔 것은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, 투자유치 등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구의 상징물은 구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강동구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매개이므로 그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및 사용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에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제139조에 징수에

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안 제8조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상위법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사료됨

④ 종합 의견

○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임. 우리나라는 태극기·애국가·무궁화·나라문장·국새 등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으며, 상징물을 관리하는 법규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¹⁾.

전국 149개 자치단체(광역 14, 기초 135)에서도 각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음

○ 강동구에서는 내부 지침인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구기 및 휘장 등에 관한 규정」(1994.9.26. 제정)으로만 관리하여 왔음.

- 따라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구의 발전과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상징물의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임

○ 또한,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입법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 없음

1) 「대한민국국기법」, 「나라문장규정」, 「국새규정」

5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